산지일시사용 [허가·신고] []협의요청서 []변경협의요청서

										(앞쪽)	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	T			처리기간	30일		
협의 구분		[] 산지일시	· 사용	허가	[]	산지일	시사용신고			
협의요청 기관장											
산지일시사용 목적											
근거법령											
일시사용 산지내역	소재지							번지 9	외 필지		
	구분	계		보전산지(m²)				준.		보전산지(m²)	
	1 5	- 11		임업용	산지			공익용산지			
	계										
	국유지										
	공유지										
	사유지								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				사 유			
「산지관리법」제15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 시사용 [허가·신고] []협의 []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.											
								년	월	일	
요청인							(서)	명 또는 인)			
산림청장,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, 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 게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											

* 첨부서류, 수수료, 유의사항: 뒤쪽 참조

-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
 - 가. 사업계획서(산지일시사용의 목적, 사업기간,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, 입목처리계획, 토석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
 - 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.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
 - 지. 교자교니다」 제10도 국고에 따는 전시인 농다당장소사에 판한 결과서 1부.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. 다.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) 1부
 - 라.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
 - 에 ICLU에 떠나 국도이항공도제계에 시작이 표시된 시청도의 데이터메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시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 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 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
 -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산림조사서(숲의 종류, 임
 - 영웅) 글표 3의 전념 모자자급의 배치기문에 해당하는 처럼이 모자 학생인 전념모자지(포의 당표, 됨 상, 나무의 종류, 숲의 나이, 평균나무높이, 입목축적을 포함하고,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·작성 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.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·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(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,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 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
 - 아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(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) 1부. 다만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신 지의 면적(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)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 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 -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
 - 1) '산담기눌 선흥 및 편디에 편안 법할 시항당」 필표 3에 따른 선담증됩기술자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사·토목기사·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·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ト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) 또는 3)에 해당하는 서류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공포제4측에 많은 도입이었으 중합체상 된는 것인데 웨다하나다) 4번
 - 자.
 - · 전시된다합 시행규칙」 제10호제2형제1호자목2) 오는 3)에 해당하는 지규(전시된다합 시행규칙」 제 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·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 재해위 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의2서식 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[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(동일인이 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[산시발시사용여가를 받으려는 언제의 한국의 2년 제달되다(증물단의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) 이상인 경우로 한정(다만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)하며,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증진법」 다구의 산시일시사용이가를 신청한 경구에는 여가를 신청한 산시 중 연습한 산시의 면칙을 합산하여 산정한다) 이상인 경우로 한정(다만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)하며,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 면적의 제한 없이 모두 별지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] .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3조의2에 반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
 - 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2.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. 사업계획서(산지일시사용의 목적, 사업기간,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, 입목처리계획, 토석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
 - 나.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)
 - 다.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. 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
 - 지역 등을 제공 제공보다 들어 보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 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의 산지일시사용에 지실적도 1부. 다만,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예
 -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,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 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) 또는 3)에 해당
 -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) 또는 3)에 해당하는 서류 1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 - 최」 제7조제1호에 따는 ㅇㅁㄴㅡ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그의 보기를 인시사용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
 - . 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.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(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3.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: 변경협의와 관련된 서류

.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.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2만원 나.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

수수료

- 산한 금액 3.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: 없음

첨부서류

유의사항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•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